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7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 강준현·김현정·김남근

이인영 · 강훈식 · 신장식

문진석 · 황정아 · 박상혁

이기헌 • 이강일 • 민병덕

의원(12인)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 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우선 현행법 제111조에선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로 한정됨.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는 소송 상대방에 대해 기술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자료도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도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또한 현행법은 기술 유용 등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해당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송 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이 위 규정에 따라 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 래위원회는 의결서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송부를 거부하는 실정임. 따라서 이와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유하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96조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기술 유용 사례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또는 종결처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등은 재신고하는 것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나수단조차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나 종결처리 결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등의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그리고 법원이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해서도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밀엄수 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법원이 공정위를 대상으로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또는 종결처리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신고인은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회의 결정으로 이를 경정하거나 재조사할 수 있음(안 제96조의2 신설).
- 나.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조사 또는 심사보고서, 기술검토보고서 등을 포함한 증거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
- 다.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시, 해당 침해의 증명을 위한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비밀엄수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1조 및 제119조).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무혐의 결정 등의 불복)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또는 종결처리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신고인 은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소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회의 결정으로 이를 경정하거나 당초 신고를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을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속기록"을 "속기록, 조사 또는 심사 보고서, 기술검토 보고서,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문가 감정의견서"로,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를 "제출을 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

351조를 준용한다.

제111조제1항 본문 중 "해당 손해의 증명"을 "해당 침해 및 손해의 증명"으로 한다.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른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96조의2(무혐의 결정 등의 불
	복)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
	의 결정 또는 종결처리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신고인은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소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회의 결정으로 이를 경
	정하거나 당초 신고를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
	으로 하여금 사건을 재조사하
	<u>게 할 수 있다.</u>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u>①</u>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u>공정거래위원회</u> 에 대하여	<u>공정거래위원장</u>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 문조서, <u>속기록</u> 및 그 밖에 재 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u>송부를 요구할 수</u> 있다.

<u><신 설></u>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 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

<u>속기록, 조사 또</u>
는 심사 보고서, 기술검토 보고
서,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문가
<u> </u>
게츠့으 며하 스 이
<u>제출을 명할 수 있</u>
다.
② 제1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
법」 제351조를 준용한다.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해당 침해 및 손해
이 즈며
<u> </u>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 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 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 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 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 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 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 니 된다. <단서 신설>

1. ~ 4. (생 략)

<u>다만, 제110</u> 조에 따른 법원
의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현행과 같음)